

전주지방법원 2024. 4. 18 선고 2023가단3096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자산관리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4. 4.

판 결 선 고 2024. 4. 18.

주 문

-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2018. 9. 16.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소외 D에게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23. 4. 10. 접수 제9883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 이관용

별지